

간병료 지급기준 업무처리 지침

근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지침번호	제2022-15호
입안책임부서	산재요양부
제·개정 구분	개정
제정일자	2007. 1. 18.
개정일자	2022. 6. 2.
개정차수	3차
시행일자	2022. 6. 2.



일하는 사람의 행복을 이어주는 세계적 사회보장 선도기관

근로복지공단

간병료 지급기준 업무처리 지침

제정 2007. 1. 18. 지침 제2007- 호
개정 2009. 7. 2. 지침 제2009-44호
개정 2017. 8. 22. 지침 제2017-29호
[개정 2022. 6. 2. 지침 제2022-15호](#)

목 차

I. 배경	1
II. 간병 필요등급(고시) 적용기준	1
1. 일반 기준	1
2. 간병 범위별 세부 적용기준	3
III. 간병료 지급기준	10
1. 간병 정보 확인	10
2. 간병 소견 확인	11
3. 간병등급 결정 안내	11
4. 다인간병 지급기준	11
IV. 행정사항	13
붙임 1. 간병 필요등급 적용을 위한 참고자료	
2.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간병료 지급 기준	
3. 외국인 간병인 주민등록번호 전산등록 방법	
4. 간병 필요정도 소견서(정형외과용, 신경외과용)	

I 배경

- (목적) 이 지침은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간병료 지급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며,
 - '09. 7. 2. 지침 개정 이후, 그 간의 환경변화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효과적인 간병등급 확인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 등 개선
-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
 - 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II 간병 필요등급(고시) 적용기준

1 일반 기준

- (제외 대상) 중환자실, 회복실 또는 폐쇄병동 입원기간은 간병기간에서 제외 <개정 2017. 8. 22.>
 - 완화의료(호스피스)서비스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기간은 간병기간에서 제외
 - 환자의 부상·질병 상태가 산재 승인 상병이 아닌 개인 질환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료 지급대상에서 제외
 - (일상생활 필요 동작)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 판단 시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동작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
 - 일시적·예외적 상황은 제외, 반복적·통상적 수행능력 수준(빈도가 높은 것) 검토
- ※ 상병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은 [붙임1]의 「간병 필요등급 적용을 위한 참고자료」를 참고

○ (둘 이상 상병상태) 환자의 상병 상태가 둘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중한 상병에 대한 간병 필요등급 적용

- 다만, 중한 상병에 대한 간병 필요등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됨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상위등급 인정 가능

사 례

- (상병상태) 업무상 재해로 뇌 손상을 입은 자가 동시에 뇌신경 손상으로 두 눈이 실명 되었으며, 현재 뇌 손상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음
- (간병필요정도) 체위변경 등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
- ☞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2호의 간병범위로 1등급 적용 가능
- ☞ 중한 상병상태인 뇌 손상에 대해서만 판단하면 혼수나 반혼수 상태가 아니어서 2등급 적용 가능하나, 두 눈의 실명이 복합되어 체위변경이 전혀 불가능하여 24시간 감시 관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1등급 적용

○ (현금급여) 산재근로자가 간병인을 지정하여 간병을 제공 받는 경우
<개정 2017. 8. 22.>

- 그 간병인이 가족·기타 간병인이면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자격(전문간병인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공단이 인정하는 간병교육을 받은 사람)을 가지면, 그 자격에 해당하는 간병료 고시금액 적용
- 1일 중 간병인 종류(전문간병인/가족·기타 간병인)를 달리하여 간병을 제공 받는 경우, 간병인 종류별로 간병을 받은 시간에 따라 각각 간병료를 산정 하여 합산(최종 산정금액에서 10원미만은 절사)

(예시) 산재근로자 1인이 두 종류의 간병인에게 간병을 받은 경우

- 산재근로자 ‘갑’(간병 3등급)이 1일 중 10시간은 가족 간병을, 14시간은 전문 간병을 받은 경우 ‘갑’에게 지급할 1일 간병료는?
 - ☞ 간병3등급에 해당하는 가족간병인 1일당 간병료: 41,170원
 - ☞ 간병3등급에 해당하는 전문간병인 1일당 간병료: 44,760원
 - $\{(41,170 \times 1\text{일} \times 10/24) + (44,760 \times 1\text{일} \times 14/24)\} = 43,260\text{원}$ (최종 산정금액에서 10원미만 절사)

2 간병 범위별 세부 적용기준

< 간병 범위별 세부 적용등급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고용노동부 고시)

간병의 범위(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간병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	해당	해당
2.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해당	해당	해당
3.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해당	해당	해당
4.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애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	—	—	해당
5. 체표면적(體表面積)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해당	해당	해당
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해당	해당
7.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	해당	해당	해당
8.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해당	해당	해당
9.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	해당
10. 그 밖에 부상·질병 상태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	해당	해당	해당

가.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호)

간병등급	간병 필요 정도(고용노동부 고시)
1등급	해당등급 없음
2등급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등급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적응기간을 거친 사람 으로 혼자 힘으로는 식사를 할 수 없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급성기 경과자) 급성기 치료가 경과된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 등에 대해 적응기간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한 자) 다른 사람이 도와줄 경우에만 식사가 가능한 사람을 의미 <개정 2017. 8. 22.>

- 보조기구 등을 사용하여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배식 운반카에서 침상의 식탁으로 옮기는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침상의 식탁 등에서 직접적으로 식사를 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

나.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2호)

간병등급	간병 필요 정도(고용노동부 고시)
1등급	두 눈의 실명 등으로 급성기 치료를 받고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사람
2등급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등급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적응기간을 거친 사람 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급성기 경과자) 급성기 치료가 경과된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 등에 대해 적응기간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3호)

간병등급	간병 필요 정도(고용노동부 고시)
1등급	뇌의 손상으로 인한 신경기능 장애로 인하여 의식이 혼수·반혼수 상태 등으로 생명유지를 위한 기도확보를 스스로 할 수 없거나 체위변경 또는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등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등급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등급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뇌의 손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정신혼미의 의미) 정신 착란으로 충동조절 불능, 혼돈상태(지남력이나 판단력 장애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 수용된 경우 원칙적으로 간병 대상에서 제외

라.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애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4호)

간병등급	간병 필요 정도(고용노동부 고시)
1등급	해당등급 없음
2등급	해당등급 없음
3등급	뇌손상의 후유증 또는 그밖에 치료 과정에서 정신·신경계통 장애 등이 동반되어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다만, 단순한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자) 정신·신경계통 장애 등이 동반되어 실어증이 초래된 경우 적용

- 이 경우 실어증이란 말하기·쓰기·알아듣기 기능을 모두 잃은 경우를 의미

마. 체표면적(體表面積)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5호)

간병등급	간병 필요 정도(고용노동부 고시)
1등급	화상의 깊이는 심부 2도 이상이고, 화상의 범위는 체표면적 35% 이상으로 급성기 조직액의 유출로 전신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2등급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화상의 깊이가 심부 2도 이상이고, 화상의 범위는 체표면적 35% 이상으로 급성기 경과 이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등급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화상의 범위는 체표면적 35% 이상으로 일상 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1등급 기준) 급성기 조직액 유출로 계속적 화상부 치료와 정맥주사를 통한 수액공급이 필요한 경우나 전신감염 우려되는 경우 등은 1등급 적용

- 체표면적: 화상의 넓이는 체표면적에 대한 화상범위의 백분율로 표시하고 머리와 목 9%, 앞가슴과 배 18%, 등과 허리부분 18%, 한쪽 다리 18%씩, 한쪽 팔 9%씩, 회음부 1%로 구분
- 화상의 정도: 화상 깊이에 따라 1도, 2도, 3도, 4도로 구분
 - 1도: 환부의 동통과 발적현상, 약간의 부종이 동반되며 물집이 생긴 상태
 - 2도: 피부가 익어 갈색이 된 상태로 피부의 진피층까지 손상되어 발적현상을 보이고 물집형성과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
 - 3도: 피부 피전층까지 손상 받은 경우로 흰색 또는 타버린 검은색으로 변하며 피부감각을 상실하여 핀으로 찔러도 동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 4도: 피부의 전층과 함께 피하의 근육, 힘줄, 신경 또는 골조직까지 손상을 받은 상태

○ (35% 미만자) 체표면적(體表面積)의 35% 이상에 걸친 화상은 아니지만, 화상 부위의 특수성(예: 양손양발의 화상 등) 또는 합병증을 고려할 때 간병 지급 대상이면 가장 유사한 간병범위에 해당하는 간병등급 적용 가능

바.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제6호)

간병등급	간병 필요 정도(고용노동부 고시)
1등급	해당등급 없음
2등급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양 팔과 양 다리의 사용이 모두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등급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인정기준) 원칙적으로, 견인장치는 침상에 고정된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석고붕대는 양 팔 및 양 다리에 모두 캐스트를 하거나, 고수상캐스트(Hip Spica Cast), 체간캐스트(Body Cast) 등의 경우에 인정 <개정 2017. 8. 22.>

사.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7호)

간병등급	간병 필요 정도(고용노동부 고시)
1등급	사지마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로 욕창방지를 위해 체위변경 등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등급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하반신 마비 등으로 혼자 힘으로 몸을 뒤척일 수 없고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혼자 힘으로 이동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등급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하반신 마비 등으로 혼자 힘으로 몸을 뒤척이거나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이동이 가능하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1등급 기준) 완전 사지마비가 아니라도 자력에 의한 생명유지 활동(기도확보, 체위변경, 음식물 삼키는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 1등급 적용 <개정 2017. 8. 22.>

- 상·하지가 생명유지를 위한 기능적 근력이 없는 경우로, 자세변화가 스스로 불가능하여 욕창방지를 위해 2시간마다 체위변경이 필요한 경우 1등급 적용

○ (2등급 기준)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써, 하반신 마비 등에 따라 몸을 움직이는 것에 심한 제한 소견이 있으나 욕창방지를 위해 스스로 체위변경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우 2등급 적용 <신설 2017. 8. 22.>

○ (휠체어 이동 의미)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이동 가능”의 의미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앉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휠체어에 옮겨 앉아 “스스로의 힘으로 휠체어를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 <개정 2017. 8. 22.>

- <삭제 2022. 6. 2.>

아.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8호)

간병등급	간병 필요 정도(고용노동부 고시)
1등급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생명유지를 위한 기도 확보를 스스로 할 수 없거나 욕창방지를 위해 체위변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등급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등급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1등급 기준) 거동이 전혀 불가능하여 스스로 체위변경이나 기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1등급 적용

○ (3등급 기준) 자력으로 몸을 뒤척이거나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이동이 가능한 경우 3등급 적용

자.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9호)

간병등급	간병 필요 정도(고용노동부 고시)
1등급	해당등급 없음
2등급	해당등급 없음
3등급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위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 경우 수술 등으로 거동이 제한된 일정기간은 수술 후 최대한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이후 기간에 대한 인정은 상병상태에 따른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정한다.

○ (인정기준) 수술 후 간병기간은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목발 등 보조기를 이용하여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창상 감염 예방 등을 위해 침상 절대 안정이 필요한 경우 인정 <개정 2017. 8. 22.>

차. 그 밖에 부상·질병 상태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0호)

간병등급	간병 필요 정도(고용노동부 고시)
1등급	생명유지를 위한 기도확보나 욕창방지를 위해 체위변경 또는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등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등급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식사씻기·배뇨·배변·옷 입고 벗기 등)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등급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스스로의 힘으로 몸을 뒤척이거나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이동은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간병 준용자) 제1호에서 제9호까지 정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간병 인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비슷한 간병범위에 따른 간병등급 적용

사 례

□ 화재로 양 팔에 3도 화상(체표면적의 35% 미만)을 입고 급성기 치료가 끝난 후 광범위한 피부 및 관절구축 등으로 양 팔을 모두 사용할 수 없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식사가 가능한 사람

✎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간병범위로 3등급 적용가능

☞ 체표면적이 35% 미만이기 때문에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5호로 적용이 불가능하나 관절구축 등의 이유로 양 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호로 적용이 가능

Ⅲ

간병료 지급기준

1

간병 정보 확인

○ (기본확인) ‘요양비청구서’상 소견서에 의거 간병범위, 간병종류, 간병기간 및 간병인 인적사항 등 **확인** <신설 2017. 8. 22.>

- 전문간병인(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공단이 인정하는 간병교육을 받은 사람)에 의한 간병일 경우 해당 자격증 또는 수료증, 간병료 지급 영수증 **확인**

- 산재근로자 및 간병인 사망 여부 **확인**

※ 노동보험시스템상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피보험자 및 사망자 정보자료 조회”(6.11.5.3) 및 “보건복지부 사망의심자 자료전송”(6.4.2.4)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

- 4대 사회보험 등 고용정보 확인을 통해 간병인에 대한 **취업여부 확인**

○ (중복급여확인)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간병서비스 수혜여부 **확인**(해당사항 있을 경우 수급 관련 증빙서류 확인) <신설 2017. 8. 22.>

※ 간병료 지급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뺀 차액분 지급하되, 간병료 지급기간이 해당 월의 일부인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일할계산 후 차액분 지급(붙임 2 참조)

- (외국인확인) 간병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을 확인하고 외국인 주민등록번호 전산 등록 기준 준수 <신설 2017. 8. 22.>
 ※ 외국인 간병인 주민등록번호 전산등록 방법은 [붙임 3] 참조
- (현장 상담) 각종 상담과정에서 간병 지급 기준 및 간병 필요 상병 상태 등에 대해 상담 실시하고 그 상담내용 기록 <신설 2017. 8. 22.>
 - 현장 상담시 간병등급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간병료를 미청구한 경우 해당 절차 및 기준 등 안내

2 간병 소견 확인

- (요양비청구서상 소견) 소견서상 주치의사의 간병필요 소견을 확인하고 필요시 관련 의무기록(진료기록, 간호기록 등) 추가 확인 <신설 2017. 8. 22.>
- (추가 소견 확인) 요양비청구서상 주치의 소견서, 의무기록 등으로도 간병 타당 여부 등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 의료기관에 별도 소견 확인 <신설 2017. 8. 22.>
 - 의료기관 소견 확인시 [붙임4]의 “간병필요정도 소견서”(정형외과용·신경외과용)를 활용
 - 간병 결정과정에서 간병 필요 상병상태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출장 확인하되, 필요시 자문의사 동행 확인

3 간병등급 결정 안내

- (결정내용 안내) 청구한 간병기간에 대해 ‘일부 지급’ 또는 ‘부지급’ 하는 경우에는 관련 처분 기준 등을 포함하여 결정통지서 또는 공문으로 안내 <신설 2017. 8. 22.>
 - 일부 지급(기간단축, 다른 법률 중복 수혜 등)시에는 해당일자까지 지급하는 사유를 명시하고, 상병상태의 변동이 없을 경우 또는 다른 법률 중복 수혜 등의 경우에 향후 기간에 대해서도 부지급 될 수 있음을 안내

4 다인간병 지급기준

- (산식) 간병인이 2인 이상의 환자를 간병(다인간병)하는 경우 간병 등급, 환자 수 및 간병인 수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계산식으로 산정

【 다인간병료 계산식 】

$$\frac{\text{간병료} + \{(\text{간병료} \times 0.2) \times (\frac{\text{간병대상 총환자수}}{\text{간병인수}} - 1)\}}{\frac{\text{간병대상 총환자수}}{\text{간병인수}}}$$

- 간병인 1인당 간병을 담당하는 환자수(다인간병자수)는 간병대상 총환자수(다른 보험 환자 포함)를 실제 간병을 담당하는 간병인수로 나누어 산정(단, 소수 둘째자리에서 절사)
- (간병등급을 달리하는 다인간병) 다인간병을 제공할 때 1·2·3등급 대상의 여러 환자를 동시에 간병하는 경우에,
 - 계산식에서의 기준 간병료는 3등급으로 계산한 후, 최종 산정금액을 125% 또는 150% 가산하여 2등급 또는 1등급으로 적용(최종 산정금액에서 10원미만은 절사)

(예시1) 간병인 1인이 환자 3명을 간병하는 경우

- 간병인 'A' 가 산재근로자 '갑' (간병 3등급)를 포함하여 3명의 환자를 간병하는 경우 '갑'에게 지급할 1일 간병료는?
- ✎ 간병3등급에 해당하는 전문간병인 1일당 간병료: 44,760원
- $[44,760 + \{(44,760 \times 0.2) \times (3/1 - 1)\}] / (3/1) = 20,880\text{원}$ (최종 산정금액에서 10원미만 절사)

(예시2) 간병인 2인이 환자 5명을 간병하는 경우

□ 간병인 'A' 와 'B' 가 산재근로자 '갑', '을', '병'(모두 간병 3등급)을 포함하여 5명을 간병하는 경우 '갑'에게 지급할 1일 간병료는?

☞ 간병3등급에 해당하는 전문간병인 1일당 간병료: 44,760원

○ $[44,760 + \{(44,760 \times 0.2) \times (5/2 - 1)\}] / (5/2) = 23,270$ 원(최종 산정금액에서 10원미만 절사)

(예시3) 서로 다른 등급을 가진 환자를 간병하는 경우

□ 간병인 'A'가 산재근로자 '갑', '을', '병'(갑: 1등급, 을: 2등급, 병: 3등급)을 간병하는 경우 '갑', '을', '병'에게 각각 지급할 1일 간병료는?

☞ 간병3등급에 해당하는 전문간병인 1일당 간병료 : 44,760원

○ '갑' 의 경우

- $[44,760 + \{(44,760 \times 0.2) \times (3/1 - 1)\}] / (3/1) = 20,880$ 원(최종 산정금액에서 10원미만 절사)

- $20,880 \text{원} \times 150\% = 31,320$ 원(최종 산정금액에서 1등급 적용을 위한 150% 가산)

○ '을' 의 경우

- $[44,760 + \{(44,760 \times 0.2) \times (3/1 - 1)\}] / (3/1) = 20,880$ 원(최종 산정금액에서 10원미만 절사)

- $20,880 \text{원} \times 125\% = 26,100$ 원(최종 산정금액에서 2등급 적용을 위한 125% 가산)

○ '병' 의 경우

- $[44,760 + \{(44,760 \times 0.2) \times (3/1 - 1)\}] / (3/1) = 20,880$ 원(최종 산정금액에서 10원미만 절사)

IV

행정사항

○ (의료기관 안내) 산재보험 의료기관(주치의사)에 정확한 간병 소견 기재 안내

- 요양비청구서상 소견서에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와 간병범위, 간병종류, 간병기간, 간병인 인적사항, 간병 필요정도 등을 빠짐없이 기재
- 주치의사 소견 작성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진료기록 등)을 근거로 기재
- 1인의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간병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간병인의 인적사항 등에 대해 모두 기재(요양비청구서상 소견서 외 별지 사용 가능)

○ (시행일) 이 지침은 2022. 6. 2.부터 시행

- 개정 지침은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소급하여 청구되는 경우 과거 상병 상태 등을 확인 후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멸시효 범위 내 소급하여 적용한다.

- 붙임 1. 간병 필요등급 적용을 위한 참고자료 1부
2.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간병료 지급 기준 1부
3. 외국인 간병인 주민등록번호 전산등록 방법 1부
4. 간병 필요정도 소견서(정형외과용·신경외과용) 1부. 끝.

[붙임 1]

간병 필요등급 적용을 위한 참고자료

□ 간병등급별 기본 요건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자력생명유지	불가능	가능	가능
자력이동	불가능	불가능	가능
자력 일상생활 동작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 간병필요정도(“항상”, “상당부분”, “부분적으로”) 판단기준

구분	간병필요정도
항상	● 중증상태로 24시간 감시감찰이 필요한 경우 (자력으로 생명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포함) ● 사지마비로 2시간마다 체위변경이 필요한 경우 ● 12시간 방치하는 경우 상병상태가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당부분	●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일부 일상생활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또는 이동시 다른 사람에게 대부분의 체중을 지탱하게 되는 경우
부분적으로	● 이동 및 일상생활을 수행시 일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상병상태 및 간병필요 등급 적용을 위한 참고자료¹⁾

의식상태

- 혼수에는 ‘혼수’, ‘반혼수’, ‘식물인간 상태’가 해당되며, 의무기록에 이에 대한 의사의 기록이 있어야 함

1)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작성 세부기준 중에서

▶ 의식수준: 5단계로 구분

의식수준	상태
명료(alert)	정상적인 의식상태로 자발적으로 모든 자극에 대해 움직이는 상태
기면(drowsiness)	집중력이 감소하나, 외부의 자극에 대해 바로 반응할 수 있는 상태로 자극이 주어질 때에만 의사소통이 가능함
혼미(stupor)	통증을 유발하는 강력한 자극에 대해 반응함
반혼수(semicoma)	통증을 유발하는 자극에 대해 신체부분을 회피하는 반응을 보임
혼수(coma)	자발적 움직임이 없고 통증을 유발하는 강력한 자극에도 반응이 없음

▶ 식물인간(vegetative status)

[개요]

대뇌의 기능은 정지되었어도 뇌간 끝 부분에 있는 연수의 생명 중추 기능은 유지되어,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지 않고서도 생명이 지속되는 상태로, 운동, 감각, 기억, 사고 등 사람의 동물적 기능은 상실하였으나, 호흡, 순환, 대사, 체온 조절 등 식물적 기능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며 의식이 없고 전신이 경직되어 있음.

[내용]

① 의사소통 불능 ②자력이동 불능 ③발어 불능 ④시각에 의한 인식 불능 ⑤배뇨실금 ⑥식사의 자가섭취 불능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함

○ 섬망

- 급성 또는 아급성의 다양한 정신기능 이상(대개 의식 및 인지기능의 손상)으로 나타나는 가역적인 뇌 대사의 장애. 대개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며 가역적임
- 원인: 중추신경계질환, 전신질환, 수술, 약물중독이나 금단 등
- 증상
 - 급성적인 의식장애, 집중력 장애, 안절부절 못함, 진전(tremor) 등
 - 혈압 변동, 빈맥, 발한, facial flushing 등의 자율신경 증상이 동반되기도 함
- 섬망과 치매증상의 감별

구분	섬망(delirium)	치매증상(dementia)
발생	급성	완만하고 잠행성
경과	보통 단기간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됨
기분	공포, 불안, 흥분성	불안정한 감정이나 성격성향
지각	환청, 환시, 환촉, 착각	환각은 두드러진 특징 아님
기억	단기기억 손상	단기기억 손상 후 장기기억 손상
의사소통	더듬거리는 의사표현, 작화증	점진적인 실어증과 작화증

인지기능

- 단기기억력,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식기술, 이해시키는 능력, 말로 의사 표현 하는 능력 등
-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 환자의 인지기능 손상여부를 평가, 6개월 이내의 검사 결과를 참조

신체기능

- 일상생활수행능력(ADL)
 - 일상적인 활동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를 평가

▶ ADL 항목별 정의

1. 옷 벗고 입기는 일상적인 옷 벗고 입는 일련의 행위가 가능한 정도를 의미함.
2. 세수하기는 수건 준비, 수도꼭지 돌리기, 물 받기, 얼굴 씻기, 수건으로 닦기 등의 행위를 의미함.
3. 양치질하기는 칫솔에 치약 바르기, 칫솔질하기, 헹굼용 물 준비하기, 가글하기 등의 행위를 의미함.
4. 목욕하기는 욕조를 활용하거나 샤워를 할 때 비누칠하기, 행구기 등의 행위를 의미함.
5. 식사하기는 투여 경로를 불문하고 영양섭취 관련한 일련의 동작을 의미함.
 - 일반적인 식사의 경우 음식이 차려졌을 때 도구를 사용하여 스스로 섭취가 가능한 정도를 평가
 - 경관영양 또는 비경구영양 등 일반적인 식사가 아닌 경우, 일반적인 식사에 상응하는 식사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가능한 정도를 평가
6. 체위변경하기는 제대로 돌아눕기, 옆드리기, 옆으로 눕기 등의 행위를 의미함.
7. 일어나 앉기는 누운 상태에서 상반신을 일으켜 앉는 행위를 의미함.
8. 옮겨 앉기는 「침상에서 휠체어로」, 「의자에서 휠체어로」, 「휠체어에서 침상으로」, 「휠체어에서 의자로」 이동하는 행위를 의미함.
9. 방 밖으로 나오기는 방에서 복도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말하며,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이동하는 능력을 평가함.
10. 화장실 사용하기는 배뇨·배변과 관련된 일련의 동작을 의미함.
 - 일련의 동작으로 하의 벗기, 배설 후 닦기, 옷 입기, 변기 물 내리기 등을 의미함.

와상상태

○ 정의

- 일주일에 적어도 4일 이상 하루 22시간 이상을 침대(자리)에 누워 있는 상태를 말함.

○ 유의사항

- 의식 및 기능상태 저하, 다른 의학적인 문제 또는 의료적인 필요에 의해 침대에서 주로 지내는 것 뿐만 아니라, 자발적이거나 자극의 부족으로 인해 침대에서 주로 생활하는 것도 포함

배설기능

○ 대변 및 소변조절 상태

- 대·소변 조절능력 및 실금현상의 존재 여부 등을 평가

구강 및 영양상태

○ 연하장애(swallowing problem, dysphagia)가 있는지를 평가

- 주로 먹거나 마실 때 자주 사례가 들거나, 기침을 하는 증상, 오랫동안 음식을 입에 계속 머금고 있거나 과도하게 침을 흘리는 증상 등을 보이는 경우 연하장애가 있다고 판단
- 정맥영양 또는 경관영양을 하고 있어 구강으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하곤란 증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

연하곤란(swallowing problem, dysphagia)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 구강, 인두, 식도 등의 구조에 결함이 있거나 기능장애가 있어서 씹고 삼키는 능력이 손실 또는 손상된 것을 말함. 연하곤란은 원인에 따라 기계적 연하곤란(Mechanical dysphagia), 운동성 연하곤란(Motor dysphagia)으로 나눌 수 있음.

○ 영양 섭취방법

- 정맥내 영양을 하고 있는지, 경관영양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환자의 영양섭취경로를 파악하기 위함.
- 정맥내 영양(parenteral/IV)은 지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말초정맥 내 영양 공급을 하는 것임.
- 경관영양은 비위관(naso-gastric tube, L-tube 등) 또는 위루 등을 통해 영양 공급을 하는 것임.

피부상태

○ 의사의 진단기록에 근거

- 피부궤양이란 표피, 진피, 피하조직의 국소적 손실이나 압력이 사라진 뒤에도 없어지지 않는 발적을 말함.
- 피부궤양(skin ulcer)의 종류에는 크게 압박성 궤양(욕창), 울혈성 궤양, 허혈성 궤양, 말초신경병증 궤양으로 나뉨

- 1단계: 압박을 제거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부 발적은 있으나, 피부 균열은 없는 경우
- 2단계: 피부가 벗겨지거나 수포모양을 보이는 부분적인 피부층의 소실이 있는 경우
- 3단계: 피부가 전층 소실되거나 피하층이 나타나고 깊은 분화구가 생긴 경우
- 4단계: 피부와 피하층이 전부 소실되고 근육이나 뼈가 노출된 경우

특수처치

- 정맥주사에 의한 투약: 항생제, 혈압강하제, 전해질 등의 약제를 치료적 목적으로 정맥내에 투여한 경우를 말함
- 배뇨관련 루 관리: 요루(urostomy), 방광루(cystostomy), 신루(nephrostomy) 등을 관리
- 배변관련 루 관리: 장루(colostomy) 등을 관리
- 영양관련 루 관리: 위루(gastrostomy) 등을 관리

- 산소요법: Mask, Cannula 등 산소 투여경로는 불문하고 산소를 투여한 경우
- 흡인: 입, 코, 기관절개관 등을 통해 suction tip을 넣어 상기도 및 기관지내의 분비물을 배출시키는 경우를 말함. 단순히 구강내 및 비강내 흡인만 하는 경우는 제외
- 기관절개관 관리: 기관절개관 교환, 기관절개구와 케놀라의 세정 또는 기관절개관 주변 드레싱 등을 시행한 경우
- 인공호흡기: 1일 8시간 이상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경우 등
- 중심정맥영양: 중심정맥관을 통하여 영양물질을 공급한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간병료 지급 기준

○ 간병료 지급기간이 해당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공제 후 지급

□ 2017. 6. 1.~2017. 6. 30.(30일)까지 가족 간병을 받은 산재근로자 A의 1등급 간병료가 1,852,500원이고, 2017. 6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바우처 총사용액이 1,591,000원이며 본인부담금이 30,000원인 경우 산재근로자 A의 간병료 지급액은?

☞ 간병료 지급액: 1,852,500원 - (1,591,000원 - 30,000원) = 291,500원

○ 간병료 지급기간이 해당 월의 일부인 경우

-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일할계산하여 공제 후 지급

【 일할계산 후 지급 산식 】

• 간병료 지급액 = 지급기간의 간병료 - (해당 월의 1일당 장애인활동지원급여액 × 간병료 지급일수)

$$\frac{\text{해당 월의 1일당 장애인활동지원급여액}}{\text{바우처 총사용액} - \text{본인부담금}} = \frac{\text{해당 월의 총일수}}$$

※ 해당 월의 1일당 장애인활동지원급여액은 10원 미만에서 절사

□ 2017. 6. 16.~2017. 6. 30.(15일)까지 가족 간병을 받은 산재근로자 B의 1등급 간병료가 926,250원이고, 2017. 6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바우처 총사용액이 1,591,000원이며 본인부담금이 30,000원인 경우 산재근로자 B의 간병료 지급액은?

☞ 1일당 장애인활동지원급여액: 52,030원 = (1,591,000원 - 30,000원) / 30일

☞ 간병료 지급액: 926,250 - (52,030원 × 15일) = 145,800원

외국인 간병인 주민등록번호 전산등록 방법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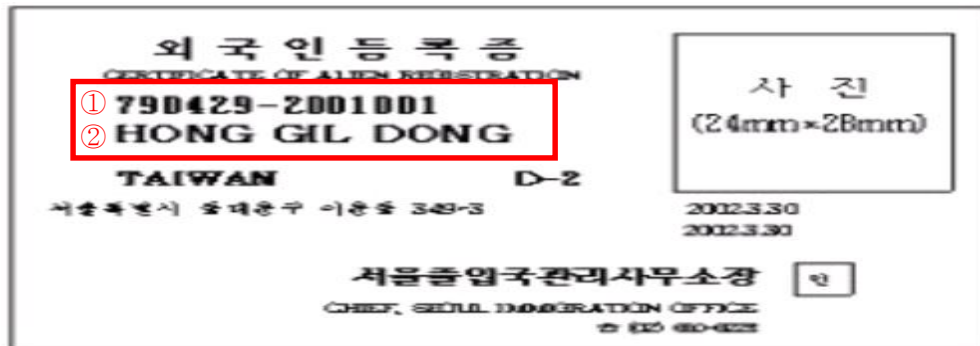
○ 영문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반드시 확인

- 외국인등록증(사본)을 제출받아 성명은 영문(대문자), 주민번호는 외국인등록번호로 전산 등록

☞ 외국인등록증: ①외국인등록번호, ②영문 성명(대문자) 확인

- 성과 이름, 이름과 이름사이는 한 칸 띄움

예) HONG^YGIL^YDONG 로 입력 (“Y” 표시는 한 칸 띄우기)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 여권의 영문성명 등 인적사항을 반드시 확인

- 성명: 여권의 영문 성명(대문자) 전산 등록
- 주민번호: 외국인관리번호 직권번호(생년월일+뒷7자리) 생성 후 전산 등록

☞ 성명 및 외국인관리번호 직권생성 처리절차

1. 여권 상 『성(姓, last name) + 이름(first name) + middle name』 순으로 입력하고 성과 이름, 이름과 이름사이는 한 칸 띄움

예) 성: mohammad, 이름: emon ali, 한글식 표기: 모하메드 에몬 알리

⇒ MOHAMMAD^YEMON^YALI 로 입력

2. 간병자관리(AA2405) > 외국인정보등록(외국인등록증 미발급 체크) > 외국인관리번호 직권생성(QA0130) 생년월일 및 성명 선택 후 조회 > 생성 외국인관리번호 확인

간병 필요정도 소견서(정형외과용)

의료기관명	재해자명	생년월일	재해일자	공단 소속기관명	담당자명		
승인 상병명							
간병료 청구기간	. . . ~			청구일			
의학 소견 내용							
골절양상	☐ 개방성 ☐ 폐쇄성 ☐ 분쇄 ☐ 압박						
수술상태	횟수	수술부위	수술명	수술일자	마취방법		
	1				☐ 전신 ☐ 국소 ☐ 척추 ☐ 경막하 ☐ 기타()		
	2				☐ 전신 ☐ 국소 ☐ 척추 ☐ 경막하 ☐ 기타()		
	3				☐ 전신 ☐ 국소 ☐ 척추 ☐ 경막하 ☐ 기타()		
	4				☐ 전신 ☐ 국소 ☐ 척추 ☐ 경막하 ☐ 기타()		
고정상태	구분	고정 방법		고정 길이	고정 부위	고정일자	제거일자
	상지	☐ 캐스트 ☐ 부목 ☐ 기타()	☐ 장상지	☐ 단상지	☐ 좌측 ☐ 우측 ☐ 양측		
	하지	☐ 캐스트 ☐ 부목 ☐ 기타()	☐ 장하지	☐ 단하지	☐ 좌측 ☐ 우측 ☐ 양측		
보행상태	☐ 독립 보행(불편) ☐ 지팡이 보행 ☐ 목발 보행 ☐ 보행기 보행 ☐ 목발, 보행기 등 보조기 사용한 자력 보행 불가 ☐ 완전 침상 의존						
	보조기 사용 자력 보행 불가 사유:						
	휠체어 사용: ☐ 무 ☐ 유 (☐ 자가 ☐ 보조인)(☐ 수동 ☐ 전동) 자력 휠체어 사용 불가 사유:						
기타 의학 소견							
위와 같이 간병 필요정도에 대한 의학 소견을 회신합니다. 20 주치의사명: (서명 또는 인) 전문과목: 면허번호:							

간병 필요정도 소견서(신경외과용)

의료기관명	재해자명	생년월일	재해일자	공단 소속기관명	담당자명						
승인 상병명											
간병료 청구기간	. . . ~ . . .			청구일							
의학 소견 내용											
일반 상태	의식	☐ 명료(Alert) ☐ 기면(Drowsy) ☐ 혼미(Stupor) ☐ 반혼수(Semicomatous) ☐ 혼수(Coma)									
	호흡	☐ 정상범위 ☐ O ₂ 캐놀라 ☐ O ₂ 마스크 ☐ 기관절개(Tracheostomy)									
	식사	☐ 자가(불편) ☐ 도움 필요 ☐ 비위관(L-tube) ☐ 경피적 위루(Gastrostomy(PEG))									
	배뇨	☐ 자가(불편) ☐ 기스모(남성용 소변기) 또는 기저귀 ☐ 단순도뇨 ☐ 유치카테터 ☐ 방광루									
	배변	☐ 자가(불편) ☐ 기저귀(Diaper) ☐ 장루(Colostomy)									
	체위변경	☐ 자가(불편) ☐ 도움이 있어야 가능 ☐ 완전타인의존(시간마다 체위변경)									
의사 소통	☐ 가능 ☐ 혼돈(confuse)된 언어 ☐ 눌어증(Dysarthria) ☐ 실어증(Aphasia)										
마비 상태	☐ 사지마비 ☐ 준사지마비 ☐ 부전마비 ☐ 없음	※ 부전마비인 경우(마비 부위별 Grade 0~5로 표기)									
		부위	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수부	하지	마비 관련 소견			
		좌측									
병적 반사	구분	우측		좌측		구분	우측		좌측		
	상지	☐ 경직(Spasticity) ☐ 이완(Flaccidity)		☐ 경직 ☐ 이완		하지	☐ 경직 ☐ 이완		☐ 경직 ☐ 이완		
욕창 여부	☐ 무 ☐ 유 (사이즈: × cm)										
보행 상태	☐ 독립 보행(불편) ☐ 지팡이 보행 ☐ 목발 보행 ☐ 보행기 보행 ☐ 목발, 보행기 등 보조기 사용한 자력 보행 불가 ☐ 완전 침상 의존 										
	보조기 사용 자력 보행 불가 사유										
	휠체어 사용: ☐ 무 ☐ 유 (☐ 자가 ☐ 보조인) (☐ 수동 ☐ 전동) 										
정신과적 문제 여부		☐ 무 ☐ 유(내용:)									
향후 상태변화 예상정도		☐ 호전 ☐ 악화 ☐ 변화미비 ☐ 호전·악화 반복									
기타 의학 소견									퇴원계획 날짜		
위와 같이 간병 필요정도에 대한 의학 소견을 회신합니다. 20 . . 주치의사명: (서명 또는 인) 전문과목: 면허번호:											